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185

제출연월일 : 2023. 6. 2.
제 안 자 : 남 양 주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주요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정책자문관을 위촉하고, 정책자문관의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시각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목적(안 제1조)

-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과 그 효율적인 추진 등

○ 기능(안 제2조)

- 주요업무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의 자문
-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문 분야에 관한 사항의 자문
- 그 밖에 정책 사안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자문

○ 위촉, 임기, 해촉(안 제3조~제5조)

- 20명 이내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고 두 차례 연임 가능
- 사의 표명, 직무 미수행, 보안 유지 등의 미준수, 품의 손상 등의 경우 해촉 가능

○ 자문료 등(안 제6조)

- 자문료(건당 15만원), 보고회 등 참석수당(위원회 참석수당 준용), 활동소요 실비 및 여비 지급 ※ 기본수당 30만원 폐지
- 주요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특정 과제의 연구, 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,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문료 차등 지급

3. 참고사항

○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)

○ 입법예고

- 예고기간: 2023. 4. 26. ~ 2023. 5. 10.(14일간)
- 예고결과: 의견없음

○ 부서협의

- 협의기간: 2023. 4. 4. ~ 2023. 4. 17.(13일간)
- 협의결과
  - · 부패영향평가(감사관): 원안동의
  - · 규제심사 대상 여부(법무담당관): 규제심사 대상 아님
  - · 성별영향평가(여성아동과): 개선의견 불수용

    ⇨ 정책자문관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균형참여를 명시하는 합의제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별영향평가 종합검토 의견에서 언급한 자문단(團)이 아닌 개인으로 각기 다른 분야에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어 양성의 대표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희소함

남양주시조례 제 호

남양주시 정책 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그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 정책자문관을 영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남양주시 정책자문관(이하 정책자문관 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남양주시장(이하 시장 이라 한다)의 자문에 한다.

1. 주요업무 수립단계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
2.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문 분야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정책 사안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위촉) 시장은 시정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 이 부한 사 에서 정책자문관을 2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.

정책자문관의 위촉은 , 산업·경제, , 지, 문 ·예 , 행정 등 전문가의 의견을 을 필요가 있는 분야로 한다.

제4조(임기) 정책자문관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, 실적에 따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자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정책자문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
2.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는 경우
3. 제8조에 따른 보안 유지 등을 준수하지 아 한 경우
4.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정책자문관으로 적합하지 아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6조(자문료 등)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정책자문관에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항에 불구하고 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특정 과제의 연구, 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, 과업의 위 기간, 무시간, 경 등과「 지 어 기 자 임단가」,「 연구용 인건비 기준단가」,「 무원 보수규정」등을 종합적으로 고 하여 자문료 등을 다 지급할 수 있다.

제2항에 따른 연구, 조사 등 필요 여부 자문료 등은 정책추진부서의 요 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제7조(정책자문관의 활용) 각 부서의 장 및 소 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에 정책자문관을 적 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.

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에 정책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성하여 정책자문관에 자문하여야 한다.

정책자문관은 제2항에 따른 자문요 이 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견서를 성하여 회 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안 유지 등) 정책자문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직무 관련하여 정보 지
2. 직무 관련하여 품 및 향 수수 는 부당한 선 및 지
3. 직무를 이용한 이 개입 등 직무 남용 지
4. 그 밖에 에 반하는 활동의 지 등

제 조(자문실적기 부 비치)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자문실적기 부를 성하고, 이를 관 하여야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한 날부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「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영 조례」 시행 당시 종전의

「남양주시 정책 및 법 자문관 영 조례」에 따라 정책자문관으로 위촉 사 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으로 본다.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이 개정한다.

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이 한다.

7. 「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영 조례」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구, 조사 등 필요 여부 자문료 등의 결정

		!$'%#(*$#)

별표

(제6조 관련)

구 분	+ , - .
0 /	%1 %(&$2$3$$$
5 4 1 6 9 7 8	<;: => @ A ? B +C D 31 978 -
G E F I H	GE /J 8K L;M N 5O GEP FRQ H 5 +,
S H	TV3SHUW X'O Y SH+,MZ[P J\ X%]^ - `_ +,

별지 제1호서식

(제7조 관련)

<table>
<tr><td>제 목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담 당 자</td><td>소</td><td></td><td>직위(직급)</td><td></td></tr>
<tr><td>성 명</td><td></td><td>전 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-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자문사항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※ 필요 시 별지 성
계 서, 보고서, 개요서 등 관련서 사본 별첨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「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영 조례」 제7조제2항에 따라 자문합 다.

20 년 월 일

담당부서장 ○ ○ ○ (서명)

정책</td></tr>
</table>

별지 제2호서식

(제7조 관련)

<table>
<tr><td colspan="5">0 a</td></tr>
<tr><td>X ^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0</td><td>c Z b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d</td><td></td></tr>
<tr><td>e # i f g h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1 j a</td></tr>
<tr><td>J k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l m F ? n + o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「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영 조례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합 다.

20 년 월 일

W p 0 q q q !r "</td></tr>
</table>

별지 제3호서식

(제 조 관련)

;d	0s	0tr !, "	0 X^	1j a	Wp 0 !Zb"	u		H 4
						v/s	0/ !3"	

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

! # $ " % '& (

)

* + , - . / 0 "2 1 * 3 4 5 6 9 8 7 ; : %

4 < = ? > @ A 4 5 B - . C E D F H G

I * JL 4 K O N P M " R P Q $ % S) T . 4 U

V W X * > Y N Z . S [F \ ] Z X T > ^ `_ @ a Z

b 8 " a Z \ c . X d h E e g f @ i j l k m Z d n i Y N

o p @ A k m Z d q 8 r s m . C w x v u t M

y P z - . C G { < E D F H G

b |

! # $ " > > 4 : (m * } * 3L * J~

• € • Q S Y ƒ , J „ r … l

‡ †

@ ‰ • ˆ X 2 S 2 ~

! %&$#" (' *) + % ,

.- ! 23./ 0/012--2-54 "8967 -

0- ! %&$#" (' *) + % , : ; <= >
? A@ %,B E% DC + E% F G IH JK: ; LM
N PRQO ST WXVU ZY N ^\[]67 -

_` ! %&$#" (' *) + % , . - a -

C b c @ "

b" *g edE%f h Cbc@" 0/012-2- ikj

l*$

!E Cbc@" 2012 0/012-2- m 2302 0/012-2-

n .0010 o ! pU ./1q?srt u x€€}•vuu•••-{,y-w|-z~u

„Kƒ5 /1. …†/ q10/ ˆ‡ƒ5 /1.…†/0†// ‹xwy.01…‰z|~‹Š-z~ ‹Ž•Œ …

%•MF o! •

’ ’ ” “ ‘ > ^• 0/01 01

2 † 2 30/01-2-.54 "8Q ! %&$#" (' *) + %

, : ; ’ ’ ” “ ‘ > – _` — ^\[]67 -

~ ™ “ ‘ L M v š œ › Ÿ ž • F ’ ’ ” “ ‘ "8 › O ¡ '

~ “ ‘ > v • , t F

_` ’ ’ ” “ ‘ > ¤ ¢ £ . - a -

¥ "

© ¦ ¨ § f 0/012-./-

b" i g ¥ " « ª

!*$

!E ¥ " 20 … ¬ 0/012-./- m …//1 0/012-..-

n .0010 o ! pU ./1q?srt u x € € } v u u • • • - { , y - w | - z ~

„ K ƒ 5 /1. …†/ 2q.†ˆ‡ƒ5 /1. …†/ .†¬..ι•yx††//3‰z|~‹Š-z~ιŽ•Œ …

%•MF o! •

Š ‹ ~	\ @ ! #			
%	! # $ " % '& (			
Œ	@	\ @ K ! # $ "		
		@ ‰ • ˆ X		
	• Ž	• •	‘ ’ ‹ ~	
´ • > ³ 4 U : & ‰				
	V Ž (* `¦ Q % C `¦F " † = C My P K Å P Q S P z =# † ƒ . @ ¸ D* * L 4 5 B † = , ¯ ® z 7 " P Q C P K Å * ¤	)) = ' ?	% 1 gÒ: 4 UPz Ó> Ô> ¨Q >ÂC PQ x>* @ 4 V Ž P E ¹uÕ Ö° ˆT * Ö× »E ’ •i ; . ¢ @ G6 §Ë4 ‘ 7 `¦Pz C NPM Hg #†> U?†S ØÙ” ¥†S ÚE ¹C É ut -Û	
	S P z Ü			
— ˜ ™				
@ ‰ • ˆ X 2				
† = & “ ƒ % l Ñ P				

L >½

! %&$#" (' *) +9C O > ¢O

.- ...¬./ 0/02-03-54 "8967 -

0- ! %&$#" (' *) +– %R: S¾ ¿ 9CÀT4 ™LMN

!œÂ:Á Ã§ ^\ FÄN ÅQO$! $ÆC , 9C O *) +

0*: ÇÈ É!; 9C O > – ZÊ4 — ¢O·67 -

‘ -$ÆC v ! %&$#" (' *) + %,

Ë- O Ì v0/01-2-03-Í ...-./- .2±Ì

7- O¹C v!¢ ?! ÏÎ T Ð Á!Ñ

È- O> vFÄÒÓ uFÄ ¶ /Ô

Õ-”Öµ v 2q3 *) ×Ø F %

_` 9C O# . - a-

b" iM¸ f ¹¯º 5 *%É „> 0/01÷..÷.- MÙ

!*$

!E 32¬3 m

n .001¬ o ! pU ./1qsrt u x€€}vuu•••-{,y-w|-z~

„Kƒ5 /1. ...†/ ¬†0¬ ˆ‡ƒ5 /1. ...†/ 0/...† ι z»¼,x0/.‰z|~‹Š-z~ ι šœ •Œ

%•MF o! •